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계획 공고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성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23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예비유니콘기업)

①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유치기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 기구(PEF), 외국투자회사(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해외투자기관으로 벤처법 제2조에 의한 투자방식으로 투자 받는 경우). 다만, 개인투자자와 개인투자조합은 제외

② 성장성: 아래 2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 이상*

* '15년말과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고용보험가입자명부 기준)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18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5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대비 72.8% 이상 증가
(예) '19.5.2신청기업: '15년말 및 '19.4월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이고 '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5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한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16.1월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

* '17년말과 최근 월말 상시종업원(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18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7년 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

③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다만, 기술보증기금 규정에 따른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 (“참고1”) 및 보증제한 업종(“참고2”),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참고3”)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한함

2.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2019. 4. 23.(화) 09:00 ~ 2019. 5. 10.(금) 18:00

문의처	주소	연락처	비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운영실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051-606-7471 051-606-7472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기술보증기금 7층	051-606-7462	제도

* 접수 이메일 : 1611@kibo.or.kr

□ (제출방법) 제출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 * 이메일 접수 시 추후 제출 서류 원본 제출
- * 모든 서류는 기한 내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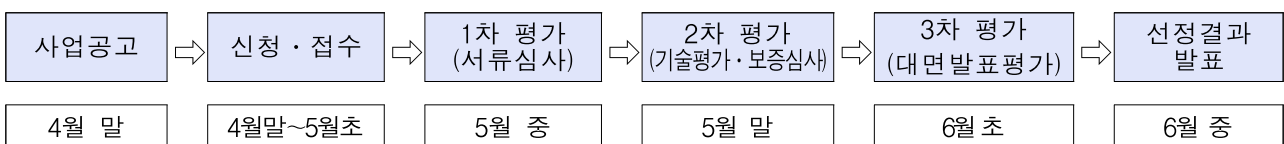
- 기술사업계획서(붙임 1)
- 투자유치 내역서(붙임 2)
- 사전동의서*(행정정보·재무자료 등)
 - * 기보 홈페이지(<https://www.kibo.or.kr:444/src/pds/kbz100.asp>)내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후 작성(신청기업용, 개인용 각각 작성)

○ 첨부서류

1. 주주명부 1부
2. '15년도말 및 최근 월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각 1부
 - * 4대보험가입자명부도 가능(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상시종업원 인정)

3. 평가 및 선정절차

□ 추진 및 발표 일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6월 중 있을 예정이나, 세부 일정은 신청 기업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절차별 세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1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기본 요건* 충족여부 등 심사 * VC투자금액,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 연평균 20% 이상, 상시종업원 10인 이상 등
② 2차 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심사 통과기업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수행(기보 중앙평가원)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③ 3차 최종평가 (대면발표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 위원회 개최 - 1~2차 평가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④ 최종선정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기업 발표, 보증서 발급

* 신청기업 중 3가지 선정요건(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충족하는 기업이 과다할 경우, 대면발표평가 대상기업은 2~3배수 이내로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평가(선정심의위원회) 평가기준(안)

평가기준	배점	세부평가지표	
1. 유니콘기업 가능성	60점	아이템·사업모델 혁신성 (10)	기존 기술·사업모델 대비 독창성과 차별성(경쟁우위), 기술·사업모델 자체의 난이도(진입장벽), 핵심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새로운 시장개척기술 등
		성장성 (10)	최근 매출 성장세의 양적·질적 건전성, 주력시장의 규모, 주력시장 성장성, 시장점유율, 해외시장 진출현황(가능성 포함) 등
		고성장 지속가능성 및 경쟁 강도(10)	시장 선도·지배적 위치 확보(가능성) 여부, 대기업 등 경쟁기업 출현 가능성(진입장벽 정도) 등 브랜드 또는 제품의 시장 내 인지도 등
		수익창출 가능성 (10)	사업모델 및 전략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및 확장성, 매출 및 비용계획의 적정성 등
		후속투자유치 가능성 (20)	시장·고객 점유율 증가 현황 및 향후 전망, 투자유치실적, valuation 및 투자 배수 실적, 현재 VC와 협상진행 여부 및 내용, IPO 가능성 및 시기 등
2. 특별보증 지원타당성	20점	특별보증 지원 필요성 및 제도취지 부합성 (20)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취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 적자여부 등 현행 재무상태 및 그간 투자유치실적, 특별보증 이외 자금조달 대안 및 가능성, 대규모 민간자금유치 이전까지 선제적 투자에 필요한 자금 규모, 특별보증 지원시 성장가능성 제고 정도,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및 기업가치 제고 정도 등
3. 자금지원 효과성	20점	자금규모 및 활용 적정성 (20)	필요자금 대비 지원금액 규모의 적정성, 추가 필요자금 확보방안, 자금 활용용도(개발, 마케팅, 글로벌진출 등) 적정성, 향후 투입자금 회수방안의 적정성 등

※ 세부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규모 및 보증지원내용

□ 선정규모

- 15~20개 내외 기업(총 사업규모 1,000억원 내외에서 선정)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

* 기존 보증금액(기보, 신보, 지역신보) 포함

- 운전자금 보증한도 30억원까지는 추정매출액의 1/2*을 적용하여 산출

* 일반적인 운전자금은 1/4 수준(예.추정매출액 60억원 기업: 특별보증한도 30억원, cf.일반보증한도 15억원)

- 다만, 글로벌 진출자금은 100억원 한도 내에서 10억원까지 운전자금 한도를 별도 인정

- 산정된 보증한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차년도에 매출성장세를 감안하여 잔여한도 내에서 한도증액 추가 요청 가능

<예시>

- 3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는 기업의 '19년도 추정매출액: 60억원, 글로벌진출 필요자금: 10억원
 - 특별보증 운전자금한도: 추정매출액(60억원)의 1/2적용 → 30억원
 - 글로벌진출자금 필요성 인정: 10억원
- ∴ '19.6월 보증지원금액 : 40억원, '20년에 '19년 매출성장세를 감안하여 추가한도 부여 검토

□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
- 보증료: 1%(고정보증료율)

5. 기타 유의사항

1.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정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보증제한기업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다만, 빈번한 연체의 범위는 「보증심사운용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다만,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의 범위와 보증제한기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제13조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 2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新	舊			
도박 게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3340	3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도박기계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사치 향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 증개업 귀금속 증개업 주류 도소매업 귀금속 도소매업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마사지업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부동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111 68121 68221, 68222	68111 68121 6822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전화방 복권 발행 및 판매업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59142 91229 91241 96992	59142 91229 91241 96992

참고 3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구분	세 부 항 목
(1개라도 “부”인 경우)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단,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총족으로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의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외사용 사실 없음